

제2024-101호 2024년 11월 14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4-479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집단에너지 조성사업)	1
○ 여수시 고시	제2024-487호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여수시 광무동 공동주택)	2
○ 여수시 고시	제2024-488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4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4-3263호	「화정면사무소 신축공사」 건축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고	6
○ 여수시 공고	제2024-3268호	세외수입(사용료) 독촉(채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10
○ 여수시 공고	제2024-3269호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안내 공고	11
○ 여수시 공고	제2024-3276호	공인 등록 공고(여수시 공고 제2024-3276호)	29
○ 여수시 공고	제2024-3282호	어선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등록 말소 최고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0
○ 여수시 공고	제2024-3291호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32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고시합니다.

2024. 11. 14.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 여수그린에너지 집단에너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

가. 성 명: 여수그린에너지(주) 대표 박중호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1384(낙포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집단에너지 공급설비(열병합발전소) 설치를 통해 여수국가산단 내 수요처에 전력 및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존 열공급시설의 대체와 청정에너지 사용을 통한 친환경 국가정책 도모하기 위함

나. 사업의 개요: 부지조성 46,051m²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전라남도 여수시 월내동 280번지의외 3필지

나. 면 적: 46,051m²

5. 사업시행기간

가. 착수예정년월일: 2024. 11.(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나. 준공예정년월일: 2026.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사

연번	위 치	지 번	지 목	지 적(m ²)	신청면적(m ²)	소유자		비고
						주 소	성명	
1	월내동	280	장	122,978	45,47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한국동서발전(주)	
2	월내동	280-40	장	2,179	107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	한국동서발전(주)	
3	월내동	280-41	장	718	236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	한국동서발전(주)	
4	월내동	1358-3	구	230	230		국토교통부	

7.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8.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여수시 광무동 504번지 일원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13.

여 수 시 장

1. 사 업 명 : 여수시 광무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주)해덕 대표 최동권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광무동 504번지 일원
4. 사업개요
 - 가. 대지면적 : 39,722m²
 - 나. 건축면적 : 13,742.8485m²
 - 다. 연 면 적 : 31,344.0956m²
 - 라. 규 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립주택 18동, 274세대
5. 사업기간 : 2020. 12. 20. ~ 2024. 11. 30.
6. 주택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의제사항
 - 가.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서류를 열람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수시 허가민원과(☎659-4098)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광무동 301-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 3-130)사업
 - 나. 명칭: 여수시 광무동 공동주택(연립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변경없음)
 - 가. 면 적: 1,587m²
 - 나. 규 모: L=88m, B=13~1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주)해덕 대표 최동권
 - 나.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202호(치평동, 랜드피아오피스텔)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가. 착수년월일: 사업승인일
 - 나. 준공예정일: **기정 2024. 10.31.** → 변경 2024. 11. 30.
6. 공공시설 등의 구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인 여수시에 무상귀속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1. 14.

여 수 시 장 (인)

○ 도로명주소(부여·폐지)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민원출장소 주소정보팀(☎061-659-3355~335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 폐지 고시 조서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이동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사곡리 800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북촌1 길 48-1	20241114	건축물신축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폐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북촌1길 48-1		20241114	건축물멸실	20091013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106-32, 106-4, 106-20, 106-41, 143-6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 길 2-1	20241114	건축물신축	20080911	지역 및 위치에측성 고려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1116-1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의곡 길 215	20241114	건축물신축	20091013	원 자연마을 지명 사 용

「화정면사무소 신축공사」 건축 설계공모 심사결과 공고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 제14조에 따라 「화정면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여 수 시 장

1. 심사개요

- 일 시 : 2024. 11. 6.(수) 14:00
- 장 소 : 여수시 여수시 보건소 회의실(3층)
- 심사대상 : 7개 작품
- 심사방법 : 투표제(심사위원회 결정)
 - 1차 투표 : 낙선작 2작품 결정
 - 2차 투표 : 5작품(낙선작 제외)에 대한 다득표 순위에 따른 가작 순위 결정
 - 3차 투표 : 1, 2순위(2차 투표 결과) 작품 대상으로 당선작 및 우수작 결정
- 심사위원 : 5명(전원 참석)
 - 심사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자 격	비 고
심사위원 (5명)	오상목	호남대학교	교수	
	송정석	동강대학교	교수	
	고철주	건축사사무소기람이엔지	건축사	
	김한얼	(주)한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이주경	건축사사무소샘터	건축사	

2. 심사결과

구 분	업 체 명	대 표 자	공동응모자
당선작(1등)	강천건축사사무소	김병수	마오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진우]
우수작(2등)	이노건축사사무소	강성민	-
가작1(3등)	(주)더시선건축사사무소	김창오	유한회사 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경일]
가작2(4등)	포텐건축사사무소	김성국	-
가작3(5등)	(주)지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권은진	-

3. 붙임

- 가. 심사의결서
- 나. 심사결과
- 다. 평가사유서

4. 당선작 이미지



당선작(1등) : 강천건축사사무소 [공동응모: 마오건축사사무소]

5. 입상작 이미지



우수작(2등) : 이노건축사사무소



가작1(3등) : (주)더시선건축사사무소 [공동응모: 유한회사 원건축사사무소]



가작2(4등) : 포텐건축사사무소



가작3(5등) : (주)지이엔지종합건축사사무소

6. 기타사항

- 그 외 당선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설계공모 공고문 및 지침서에 따름
- 여수시 회계과 청사관리팀(☎ 061-659-3223)

세외수입(사용료) 독촉(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세외수입(사용료) 체납자에게 독촉(체납)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11. 13.

여 수 시 장

- 다 음 -

- 1. 공고내용** : 세외수입(사용료) 독촉(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 2024. 11. 13.(수) ~ 2024. 12. 4.(수) (21일간)
-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대 상 자		부과대상	납부금액 (원)
	성명	주 소		
1	오정완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7길 28, 101동 807호 (소호동, 우미오션빌)	공유수면점사용료(여수시봉계동 791-16)	672,270
2	㈜홍익홀딩스	전라남도 여수시 만성로 231 (만홍동)	공유수면점사용료(여수시만홍동 1473-14)	3,372,320
3	김세현	전라남도 여수시 남구 함구미윗길 33	공유수면점사용료(여수시돌산읍올림리616)	586,180
4	김은숙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골길 19	공유수면점사용료(여수시호명동 1806)	22,930
5	문주영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6길 49-16 (국동)	국유재산변상금(국동 37-4번지)	3,261,370

- 4.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내용

- 세외수입(사용료) 체납에 따른 독촉(체납)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자께서는 방문 및 전화 문의를 통해 내용 확인 후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문의사항** : 여수시 건설과(건설행정팀) (☎061-659-4034)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안내 공고

2025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어업인 협회 또는 단체에서는 2024년 12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024. 11. 13.

여 수 시 장

I.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5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

2. 신청자격(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 상 회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 ②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 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선택의무	① 자율적 조업중단, ② 어획증명, ③ 감척, ④ 그 밖의 의무

※ 선택의무 중 ‘어선감척’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되며,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이행’, ‘금지체장’, ‘어구규격·어구수량제한 강화’ 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 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인정

3. 제외대상 :

- ① 감척대상 어선(감척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과 신청서 제출이후 감척대상에 포함된 경우 포함)
- ② 수산직불제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라 이법 등의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2를 참조

4. 지급 요건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직불금 신청 시 받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제출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준수의무별 이행기준 및 이행방법 등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5.9.30.)까지 이행할 것
- 조업일수 산정기간(‘24.10.1.~’25.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5. 지원금액

- 지원율 : 국고 100%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 원 정액 지

급

-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 어선 1척당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의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 선단조업 :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업종은 본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허가받은 어선(본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부속선'의 톤수는 10%만 인정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

구간 (어선 톤수)	1구간 (10톤 이하)	2구간 (10~20톤)	3구간 (20톤 초과)
단가	75만 원/톤	70만 원/톤	65만 원/톤

- 지급상한톤수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 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 원)으로 한정

6. 지급방법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불금을 지급
- 직불금은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7. 지급시기 : 준수 의무 이행 여부 점검과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 이후 직불금 지급

8. 지급제한

- (개인의 직불금 지급 제한) 지급대상 후보자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단체 구성원의 직불금 지급 제한) 이행점검결과 단체 구성

원들의 부적격 비율에 따라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예비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단체 지급 제한) 예비 지급대상 후보단체는 단체의 순위에 따라 기준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순위까지 우선 지급하고 잔여 예산이 기준 직불금 이내인 경우, 차순위 단체의 구성원에게 일률 감액하여 지급

구분		지급 제한	이행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전부 미지급	신청년도의 직불금 지급일까지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6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1차 위반 시 10% 미지급,	
7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2차 위반 시 20% 미지급,	
8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3차 이상 위반 시 40% 미지급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지급대상 후보단체 등의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에 대해 단체 구성원들의 의무 이행률이 저조하면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 직불금 지급 미지급(감액) 비율 >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직불금 수령 구성원의 감액 비율	비고
20% 이상 30%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액에 따른 직불금은 10원 단위 절사 ■ 인원산출 계산에 따라 소수점 발생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하위비율은 '올림' 처리하고 상위비율은 '버림' 처리
30% 이상 40% 미만	20%	
40% 이상 50% 미만	40%	
50% 이상	전액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 선정 통보 이후 중도에 포기하는 구성원은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으로 간주

- 예비 지급 대상 후보단체는 후보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단체에 기준 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잔여 예산이 기준 지급금 지급에 부족할 경우는 차순위 단체 구성원에게 일률 감액하여 지급

□ 단체에 대한 제재

- 직불금을 이미 받은 자가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직불금 수령자가 포함된 단체를 아래와 같이 제재

구분	총허용어획량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감척	그 외 자원보호의무 (생분해성어구 사용 등)
미이행 어선이 포함된 단체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해당없음

□ 지급한 직불금의 환수

- 시·도지사 등은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게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직불금 수령자에게 이미 지급한 직불금을 즉시 환수

□ 제재부가금의 징수

- 시·도지사 등은 직불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으면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
- 시·도지사 등은 직불금을 받은 자가 직불금을 받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면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를 추가로 징수

*** 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II. 신청 기간 : 2024. 11. 18. ~ 2024. 12. 13.

III. 신청장소(방문 접수) :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임시별관, 3층)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659-3918)

IV. 구비서류

- 단체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각 1부
- 소속 어업인 :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각 1부.
 - * 별지 제4호는 [별지 제2호]의 단체 이행 세부 계획서와 동일할 경우 제출 불필요
-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1부.
- 어업생산실적 증빙자료
 - 매매매: 구매확인서[별지 제2호 참고서식]와 영수증 사본 등 위판실적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기간 : 24. 01. 01. ~ 12. 31.)
 - 수협위판: 위판기록 확인 요청서[별지 제2호 참고서식]

※ 공고문과 지침이 상이할 경우 사업지침이 우선함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신청업종, 단체인원 / 참여인원		신청업종 : 단체인원 :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어선수 : 척
단체	단체명		
	대표자명		
주 소			
대표 연락처	사무실	팩스	
	e-mail	휴대폰	
<p>대상 단체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2024. . .</p> <p>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p> <p>해양수산부장관 귀하</p>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2024. 00. 00.(제출일)

(단체명)

1 단체 현황

업종	허가수(어업인수)		주요어획어종
근해채낚기	○○건(○○명)	경북 ○○건, 강원 ○○건, 제주 ○○건	갈치(70%), 오징어(20%), 기타(10%)
근해연승	○○건(○○명)	경북 ○○건, 강원 ○○건, 제주 ○○건	

* 주요 어획어종은 신청단체의 구성원의 주요어획어종을 표기하되, 어획어종별 어획량 비중을 () 내에 백분율(%)로 표기

2 자원보호의무 이행 계획

1. 필수업무 (작성 예시)

구분		①	②		③	④	⑤
		참여 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배분량	배분량 설정근거	평가지표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기본 의무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배분량 준수	총 00척 중 00척 참여	○○○ '24.7~'25.6	○○○톤	해수부(또는 지자체) 할당	TAC 어종수 또는 TAC 관리비율	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 소진량 증빙 자료, 수협위판기록 등

- 1) TAC 어종 개수 : '24.7~'25.6 여기에 신청단체 구성원의 50% 이상 적용하는 어종만 적합성 평가 시 인정. TAC 어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 2) TAC 관리 비율 : '23.7~'24.6 여기에 신청단체 구성원의 전체 어획량 중 TAC 어종 어획량(TAC 소진량) 비율.
 - 신청단체 구성원의 전체 어획량은 '23.7.1~'24.6.30 수협위판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
 - 신청단체 구성원의 TAC 소진량은 한국수산자원공단 확인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

2. 선택의무 (작성 예시)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참여어선 수	조업중단 기간	증빙 자료
	총 00명 중 00명 참여	'25.6.1 ~ 6.30(1개월) (해당기간 전면 조업중단)	출입항기록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총 00명 중 00명 참여	어획증명 관리 앱으로 조업상황 보고	해수부 조업감시시스템에 보고된 어획실적
어선 감척	단체의 어업종류명		증빙 자료
	근해연승		-
그 밖의 의무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해양쓰레기 수거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총 00톤(척당 00톤) '25.1.1 ~ 9.30. (연안)총 00kg(척당 00kg) '25.1.1 ~ 9.30.	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 등 수거량(Kg 환산) 확인이 가능한 자료
	어구보증금제 이행	폐어구 반환 후 회수 관리	보증금 지급 현황 등
	생분해성 어구 사용 총 00명 중 00명 참여	조기자망, 대게통발 등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또는 생분해 어구 구매 계약서(생분해 성능 인증서 포함)
	해양포유류 흔획저감장치 부착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흔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
	어구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	저인망어구 54→66mm이상 사용 '25.1.1 ~ 9.30 통발 사용갯수 제한 (2,500개→2,000개) '25.1.1-9.30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채포 체장·체중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	채포금지체장·체중 설정 (감성돔 25→30cm, 대문어 600→650g)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종자방류 총 00명 중 00명 참여	낙지 10만, 꽃게 20만미 '25.6	회의록, 종자구매내역, 방류사진 등
	기타 준수 의무	-	-

* 상기 내용은 '예시'임.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당사항 없
는 경우 공란)하되, 선택의무별로 단체 구성원수의 4/5이상 참여해야 점수
부여 하되, 선택의무로 어획증명을 선택한 경우는 구성원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

* 그 밖의 의무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

총허용어획량 개인(업체) 간 구매 확인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연번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간 매매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법인명		
	주소(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어업허가 (면허, 신고) 현황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등록(등록번호:) []그 외(「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허가(면허, 신고)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면허, 신고) 기간	포획물·채취물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사용 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지급요건 (준수의무)	기본의무		선택의무		
	TAC 준수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 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		[]	[]	[]
전년도 어업생산실적					
어획금액(원)			어획량(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수산물 위관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어촌 관련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 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어촌 관련 용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점검·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2.“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 3.“입금계좌”란에는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 4.“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는 신청인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선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허가·면허·신고 어업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포획물·채취물란에는 대표적인 2~3종만 적고, 사용어선란에는 해당 허가·면허·신고 시에 등록된 모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선명), 총톤수, 마력을 적습니다.
※ 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 적힌 내용은 어업허가대장(어업권관리대장)에 따른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 6.“지급요건(준수의무)”란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 중 신청연도에 참여할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 표시를 합니다.
- 7.“전년도 어업생산실적”란에는 신청연도의 전년도 어획량과 어획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어획량은 어종을 불문하고 전체 어획량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 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 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 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요건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부정·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 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 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 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 참여단체명 : ○○○협회, 단체, 조합 등

1. 필수업무

구분		①	②		③	④	⑤
		참여 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배분량	배분량 설정근거	평가지표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기본 의무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①배분량 준수	총 00척 중 00척 참여	○○○ '24.7~'25.6	○○○톤	해수부(또는 지자체) 할당	TAC 어종수 또는 TAC 관리비율	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 소진량 증빙 자료, 수협위판기록 등

2. 선택의무

구분	의무 내용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 자료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주요어획 어종 및 전면 조업중단 기간		출입항기록
	오징어 '25.2.1.~'25.2.28.(1개월)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 이행할 의무 >	< 이행할 내용, 기간 등 >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어구 제한	저인망어구 54→66mm이상 사용 '25.1.1.~'25.9.30. 통발 사용갯수 제한 (2,500개→2,000개) '25.1.1.~'25.9.30.	
	채포 체장·체중 제한	채포금지체장·체중 설정 (감성돔 25→30cm, 대문어 600→650g)	
	종자방류	낙지 10만, 꽃게 20만미 '25.6	

* 상기 내용은 '예시'임.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 그 밖의 의무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

여수시 공고 제2024-3276호

공인 등록 공고

「여수시 공인 조례」제6조에 의거 공인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1. 13.

여 수 시 장

1. 등록일 : 2024. 11. 13.
2. 등록사유 : 신규등록
3. 등록내역

구분 (관리번호)	공 인 명	등록 인명	관리부서	사용일
등록 (2290)	여수시장인민원사무전용		노인장애인과	'24. 11. 18.

공 시 송 달 공 고

「어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4년 어선 일제정비 추진을 위해 무허가 어선 등의 소유자에게 어선등록 말소 최고장을 주소지로 등기 우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사망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여 수 시 장

1. 제 목 : 2024년 어선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어선등록 말소 최고장 반송분 공시 송달
2. 공고대상 : 10명(어선소유자)
3. 공고기간 : 2024. 11. 14. ~ 2024. 11. 27.(14일간)
4. 공고내역 :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근거하여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어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061-659-3919)

2024년 어선 일제정비 최고장 반송 공시송달 공고대상

연 번	연 도	시 군	최 신 주 소	소 유 자	선 적 항	어 선 번 호	선 명	톤 수	진 수 날 짜	선 질	기 관	마 력	반 송 여 부
1	2024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항대길 **	김*관	여수시 금천항	0002016- 6468***	장기호	1.38	2000.01.18.	FRP	육상차량용 디젤	157	반송
2	2024	여수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요죽길 **, 1**동 1***호 (오식도동, *****)	장*호	여수시 이천항	0307003- 6281***	한성호	4.95	2003.06.25.	FRP	선박용디젤	409	반송
5	2024	여수시	전라남도 광양시 광산로 1**-** 1**동 1***호 (중 동 **아파트)	박*학	여수시 봉전항	0409001- 6448***	제303남광호	17	2004.08.20.	FRP	선박용디젤	550	반송
4	2024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로 3*, 3**호	고*음	여수시 국동항	1203005- 6481***	진동호	8.55	1994.11.01.	FRP	육상차량용 디젤	269	반송
5	2024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고내*길 1*	김*길	여수시 고내항	9411016- 6467***	제6광명호	0.84	1975.06.01.	목	육상차량용 디젤	49	반송
6	2024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소호로 6**, 2**동 2**호 (안산 동, **아파트)	김*관	여수시 소호항	9609256- 6461***	우성호	9.16	1990.09.01.	FRP	선박용디젤	430	반송
7	2024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남* 길 3*, *호 *층	강*학	여수시 남면	9609309- 6461***	보성호	8.55	1992.07.01.	FRP	선박용디젤	204	반송
8	2024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미평동 **, 2**동 1***호 (미평 동 **아파트)	강*동	여수시 화정면	9801016- 6467***	제비2호	0.72	1989.06.01.	FRP	육상차량용 디젤	10	반송
9	2024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마상길 1**	유*욱	여수시 이야포항	9805018- 6461***	해진호	0.72	1996.06.01.	FRP	가솔린선내 외기	40	반송
10	2024	여수시	전라남도 순천시 동신흥* 길 1*, *층	이*근	여수시 소경도항	9911001- 6461***	중앙호	1.04	1999.09.13.	FRP	육상차량용 디젤	105	반송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우리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시설관리를 위하여 방범용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4년 11월 14일

여수시장

1. 사업명: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
2. 설치목적: 공영주차장의 차량안전 보호, 주차 시설물관리, 화재예방 등을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 등 필요구간에 CCTV 설치
3. 관련근거
 -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 기간: 2024. 11. 14. ~ 2024. 12. 3.(20일간)
5. 행정예고 방법: 여수시청 홈페이지(www.yeosu.go.kr) 공고
6. 설치 예정지

주차장명	위 치	카메라 수량	촬영시간	운영기관
시전동-19 공영주차장	웅천동 1878-11	24대	24시간	여수시청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4. 11. 14. ~ 2024. 12. 3.(20일간)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Fax: 061-659-5864)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라. 보내실 곳: (우 59674)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주차차량과

마. 문의 및 안내: 여수시 주차차량과(☎ 061-659-2142)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서 1부. 끝.

[붙임]

의견제출서			
예고명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		
의견제출자	성명 (개인/단체)		
	주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공영주차장 방범용카메라(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